

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7일
------	-----	------	----

신청인 (기업)	① 기업체명 (홈페이지:)	② 사업자등록번호		
	⑤ 대표자명	생년월일	성별	내국인/외국인
	⑥ 주 소	전화번호		
		팩스번호		
	⑦ 매출액(년도)	백만원		
⑧ 종업원 수(년)		명	⑨ 개업 연월일(년 월 일)	
⑩ 기업 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대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중견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소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벤처기업(년 월 일) 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원·교원 창업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그 밖의 유형			

기업 부설 연구 기관	⑪ 기업부설 연구기관명			⑫ 설립 연월일	
	⑬ 기업부설 연구기관장	성명	직위	생년월일	근무 형태 []전임 []겸임
	⑭ 소재지			전화번호	
				팩스번호	
	⑮ 신청분야	[]과학기술		[]서비스	
	⑯ 연구분야	<input type="checkbox"/> 건설 <input type="checkbox"/> 금속 <input type="checkbox"/> 기계 <input type="checkbox"/> 생명과학 <input type="checkbox"/> 섬유 <input type="checkbox"/> 소재 <input type="checkbox"/> 식품 <input type="checkbox"/> 전기전자 <input type="checkbox"/> 화학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 <input type="checkbox"/> 산업디자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<input type="checkbox"/> 하수·폐기물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<input type="checkbox"/> 부동산 및 임대 <input type="checkbox"/> 운수 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서비스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<input type="checkbox"/>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 <input type="checkbox"/> 도매 및 소매 <input type="checkbox"/> 숙박 및 음식점 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 및 보험 <input type="checkbox"/>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 <input type="checkbox"/>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
	⑰ 주 연구 내용				
	⑱ 연구개발 인력	연구전담요원 명	연구보조원 명	연구관리직원 명	⑲ (연구기관 내 위치한) 연구기자재 종
⑳ 연구공간	[] 건물 전체		[] 독립공간	[] 분리구역	
	[] 소유 [] 임대	건물 m ²	[] 소유 [] 임대	m ²	[] 소유 [] 임대 m ²

㉑ 연구개발투자 (년도)	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인건비	백만원
	연구시설비	백만원
	그 밖의 연구개발투자액	백만원

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기업대표

(서명 또는 인)

(사)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귀하

첨부 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연구개발활동 개요서(별지 제2호서식) 1부 2. 연구기자재 현황(별지 제3호서식) 1부 3. 연구개발인력 현황(별지 제4호서식) 1부 4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(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5. 회사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조직도 1부 6.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내부 도면(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을 포함합니다) 1부 7.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비 명세서 1부(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합니다) 8.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가입증명서(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합니다) 9.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(⑫의 신청분야가 서비스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합니다) 10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(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합니다) 11. 연구원·교원이 창업한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(해당 기업만 해당합니다) 12.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(해당 기업만 첨부합니다) 13.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(해당하는 기업만 첨부합니다) 14.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직원이 해당 기업의 직원을 증명하는 서류(국민연금·국민건강보험·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) 1부 	수수료 없음
----------	--	-----------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 ※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(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)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.

기업대표

(서명 또는 인)

신청서 작성방법

1. ③의 "업종"란에는 해당 기업의 주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(KSIC코드)에 따라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.
2. ④의 "주요 생산품"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품, 서비스를 적습니다(예, 자동차 타이어, 핸드폰, 온라인게임, 조절설계 등).
3. ⑥의 "주소"란에는 해당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소재지의 번지수와 빌딩명, 빌딩 호수까지 적습니다.
4. ⑦의 "매출액"란은 신청일 기준 최종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준연도를 적습니다.
5. ⑧의 "종업원 수"란에는 가장 최근의 상시 종업원 수를 적습니다(일용직은 제외합니다).
6. ⑨의 "개업 연월일"란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.
7. ⑩의 "기업 유형"란의 구분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8조,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를 기준으로 선택하고,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일 경우 유효기간을 적습니다.
8. ⑫의 "설립 연월일"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설립한 날짜를 적습니다.
9. ⑭의 "소재지"란에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의 번지수와 빌딩명, 빌딩 호수까지 적습니다.
10. ⑮의 "신청분야"란은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연구개발활동에 따라 해당 분야를 선택합니다.
11. ⑯의 "연구분야"란은 ⑮의 신청분야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분야를 선택합니다. 다만, ⑯에서 "서비스"를 선택한 기업은 해당 기업의 주 업종과 관련한 연구 분야를 선택합니다.
12. ⑰의 "주 연구 내용"란에는 구체적인 연구 내용의 대표적인 활동을 적습니다.
13. ⑱의 "연구개발인력"란에는 연구개발인력 현황(별지 제4호서식)의 직원 수를 적습니다.
14. ㉑의 "연구기자재"란에는 연구기자재 현황(별지 제3호서식)의 연구기자재 수를 적습니다.
15. ㉒의 "연구공간"란에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아래 형태에 따라 "건물 전체", "독립공간", "분리구역"을 선택하고, 자사 소유 건물 일 경우에는 "소유", 임대건물일 경우에는 "임대"를 선택합니다.
 - 건물 전체: 건물 전체를 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 사용하는 경우(건물의 전체 연면적 기재)
 - 독립공간: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고 사방이 고정된 벽체로 천장까지 구분한 공간
 - 분리구역: 칸막이 등으로 연구공간을 구분한 경우
 ※ 다만, 분리구역의 경우에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서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만 선택합니다.
16. ㉓의 "연구개발투자"란에는 신청한 해부터 향후 1년간의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투자계획을 "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인건비", "연구시설비", "그 밖의 연구개발투자액"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.

신청서류 처리절차

